

\sim \sim		완결도		77
	_	- 오타스크 누	. 447	7

관리번호	W-12.1(7)	제정일	2013년 02월 15일
승인책임자	병원장	최근개정일	2016년 10월 31일
검토책임자	규정관리위원장	시행일	2016년 12월 01일
주무부서	심사과, 원무과	검토주기	3년
관련근거	의료기관인증기준12.1	검토예정일	2019년 10월 30일

|. 목적

진단과 치료의 근거, 치료과정과 경과의 기록 및 치료의 연속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재원 및 퇴원환자의 의무기록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완결하여 필수 기록의 누락이나 기재내용의 완결성, 정확성 및 일관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의무기록의 충실성을 제고하고자 한다.

Ⅱ. 용어정의

미완결 의무기록이란 [W-12.1(3) 의무기록 작성 지침]에 따라 의무기록의 작성내용 및 작성시한을 검토하여 기재사항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

Ⅲ. 정책

- 1.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를 위한 필수서식은 의학적 초기평가, 경과기록, 간호기록, 수술/시술기록, 마취기록,동의서,전과기록,퇴원요약지 등을 포함한다.
- 2. 주진단명은 [W-12.1(4) 주진단명 선정 지침]에 따르며 진단코드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(KCD-6)에 따른다.
- 3. 표준화된 질병(시술)코드를 사용은 국제의료행위분류(ICD-9-CM)또는 EDI-Code에 따른다.
- 4. 각 서식의 내용, 작성시한, 기록 주기, 작성 책임자 등은 [W-12.1(3) 의무기록 작성 지침]에 따른다.
- 5. 입원환자 의무기록은 재원 중에 완결을 원칙으로 하나 재원 중에 완결하지 못한 의무기록은 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에 완결되도록 한다.
- 6. 의무기록 관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.

Ⅳ. 절차

- 1. 재원 및 퇴원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필수 기록지 및 각 기록지의 필수항목이 작성되어 있는 지를 모니터링해서 누락 시 미 완결 의무기록으로 분류한다.
- 2. 미 완결 의무기록으로 분류된 의무기록은 '미비 관리 프로그램'에 등록하여 작성자로 하여금 완결하도록 한다.
- 3. 등록된 미비는 실시간으로 조회된다. 의사화면의 '미비기록조회'에서 조회가능하다.
- 4. 미완결 의무기록의 신속한 완결을 위해 원내 알림(팝업), 유선을 이용하여 원활한 의사 소통을 한다.
- 5. 의무기록 성과 관리 및 경영진 보고, 공유
 - 1) 미완결 의무기록 보고
 - (1) 주 1회 미완결 의무기록건수를 해당 주치의에게 통보한다.



- (2) 월 1회 완결 현황을 진료과별, 의사별로 작성하여 의무기록위원장,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 후 주치의에게 통보한다.
- (3) 월 1회 진료과별, 의사별 완결 현황을 의무기록위원회에 보고하고 게시한다.
- 2) 진료과별, 의사별 성과관리 피드백 및 공유
 - (1) 미비기록조회 화면 공지, 메시지 팝업, 유선통화, 진료과별 컨퍼런스 공지
 - (2) 의국 게시판에 공지하여 관련 직원과 공유

V. 참고

- 1. 의료법 제22조(진료기록부 등) 및 의료법 제23조(전자의무기록)
- 2.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(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) [W-12.1(3) 의무기록 작성 지침]

입안자	규정관리위원장	
승인책임자	병원장	
서명일		